

지정번호: 제 호

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 또는 단체명:

2. 대표자: (생년월일:)

3. 교육·훈련 소재지:

4. 교육·훈련 내용:
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

도지사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